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경계설정 기준 정비〉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섭 기준의 법률 상향	4
2. 비도시지역 경계기준의 변경	5
※ 참고자료	9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9
2. 홍기원 의원안과 시행령 비교	10

I. 제안경위

1. 발의자 : 홍기원 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6. 3. 25.
3. 회부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3종 구역¹⁾에 연접한 지역의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경계를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里)의 경계로 규정하여, 해당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1종 구역·제2종 구역·제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제1종 구역이 가장 소음영향도가 높은 구역임. 따라서 제3종 구역은 소음대책지역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하게 됨. (참고자료 1 참조)

□ 현행법 제5조제1항2)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3)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조제2항4)은,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5)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까지,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까지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경계지 설정 기준 비교]

구 분	개정안	현행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비도시지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 2) 「군소음보상법」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군소음보상법」 제2조(정의)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4)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①제3종 구역 연접지역의 포섭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과 ②비도시지역의 경계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里)의 경계로 변경하는 부분인바,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함.

1.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섭 기준의 법률 상향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 구역 연접 지역의 포섭 기준을 법률(안 제5조제2항)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경계설정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법 적용 기준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특히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은 주민의 소음에 대한 보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법률에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방부는 유사 입법례 및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계설정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를 다루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⁶⁾도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경계지 설정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개정안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비교]

구 분	개정안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비도시지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 경계설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법 기준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이나 지역 여건 변화 등 상황 변경 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지므로, 경계지 설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 하겠음.

2. 비도시지역 경계기준의 변경

- 현행 시행령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에서는 같은 리(里)에 거주하며 유사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일부는 제3종 구역에 포함되고 일부는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 경우 같은 마을 주민 간 보상의 형평성 문제나, 마을이 보상 대상지와 비대상지로 나뉘는에 따른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최근 5년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⁷⁾에 제기된 민원 내역]

구 분	민원내용	처리결과
'22년	소음대책지역 종별 구분 변경 요구(51명)	기각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보상 제외된 동 주민의 소음대책지역 포함 요구(11명)	기각
	소음대책지역 미포함 세대의 소음대책지역 포함 요구(63명)	기각
'23년	소음대책지역 종별 구분 변경 요구(43명)	기각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보상 제외된 동 주민의 소음대책지역 포함 요구(1명)	기각
	소음대책지역 미포함 세대의 소음대책지역 포함 요구(5명)	기각
'24년	소음대책지역 미포함 세대의 소음대책지역 포함 요구(2명)	기각
'25년	없음	-

※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리(里)를 경계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같은 마을에 속한 주민을 일체로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경계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14조제1항⁸⁾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리(里)는 행정상 구획 단위일뿐 그 자체가 소음영향도와 직접 연동되지 아니하므로, 리의 경계 전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경우 실제 소음 영향도와 보상대상 간의 불일치가 확대될 수 있음.

7) 「군소음보상법」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군소음보상법」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기준은 일정 소음도 범위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도록 한 것⁹⁾과 달리, 개정안은 그러한 한계 없이 리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 소음피해 정도가 낮은 지역까지 보상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②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치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L), 1엘·알디엔(LRdn, dB(C)), 1엘·알디엔(LRdn, dB(A))¹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지역의 경계는 개별 건축물 단위인 ‘단독주택’의 경계로, 비도시지역의 경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양자 간 포섭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동일하게 소음피해를 입는 도시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좁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새롭게 설정된 리의 경계 밖에 위치한 인접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더라도, 비도시지역은 소음도가 기준치 대비 1웨클 등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3종 구역에 포함이 가능하며, 이는 소음피해가 현저히 낮은 지역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예를 들어, 제3종 구역의 기준이 80웨클 이상인 경우, 그 인접지역은 소음도가 79웨클 이상인 지역까지만 제3종 구역에 포함될 수 있음)

10) 웨클(WECPL)은 군용비행장(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이며, 1엘·알디엔(LRdn, dB(C)·dB(A))은 군사격장(사격·폭발) 소음의 평가단위임. (참고자료 1 참조)

□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리(里)의 경계로 변경할 경우 같은 마을 주민 간 형평성과 경계설정의 명확성은 높아지는 반면, 소음영향도 기준 보상 원칙과의 정합성 및 도시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경계기준 변경은 이를 균형 있게 고려 하여 결정할 문제라 하겠음.

이에 국방부는 개정안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지역 등 다른 보상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재원조달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시행령 별표)

구 분		소음대책지역	기 타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		제1종 구역	-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	-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등 ¹¹⁾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기타 ¹²⁾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군사격장	대형화기	제1종 구역		94(dB(C)) 이상
		제2종 구역		90(dB(C)) 이상 94(dB(C)) 미만
		제3종 구역		84(dB(C)) 이상 90(dB(C)) 미만
	소형화기	제1종 구역		82이상(dB(A))
		제2종 구역		77(dB(A)) 이상 82(dB(A)) 미만
		제3종 구역		69(dB(A)) 이상 77(dB(A)) 미만

※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C):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A):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등

1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등

2. 홍기원 의원안과 시행령 비교

법률 개정안(홍기원 의원안)(제5조)	시행령(제2조)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u>비도시지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u> ③ ~ ④ (생략)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u>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u> ③ ~ ⑥ (생략)

<홍기원 의원안과 시행령의 차이점>

- 홍기원 의원안은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里)의 경계로 규정 하려는 반면, 현행 시행령은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로 규정하고 있음.